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입주(예정)자 안내문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와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시행사, 임대사업자) 간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공급되며,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각각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임대차계약 및 세대를 운영·관리 하며, 민간임대주택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시행사,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및 세대를 운영·관리 합니다.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령 및 규정을 따르는 민간임대주택으로서, 민간임대 입주(예정)자분들의 임대보증금 관련사고 예방 등을 위해 계약 진행 및 입주 중 확인하셔야 할 필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입주(예정)자 임대차 계약 진행 시 확인 필수사항

필수 확인사항	해당 법령 및 근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여부	[관련 법령, 협약 내용] 사업자(시행사,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임시사용승인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의 신청일(신청일 이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모집일) 이전까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확인 (*계약일)	대항력(점유,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갖춰야, 임차인 보호(선순위자) 가 될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은 이행되지 않음
가압류 상황 (*계약일, 잔금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등기부등본상) 잔금일 익일까지 물건지(입주단지)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근저당설정, 가압류 등 권리관계변동 이 없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전 가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 상황 확인 방법 : 임대차계약기간 시작 직전 임대주택에 대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보증서 발급일과 임대차계약 시작일 사이 새로운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 ※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가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 이후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보증보험은 이행되지 않음
최우선변제권 해당여부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8조”에 따라 소액임차인(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가진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대항력 요건을 갖춘 세입자가 다른 채권보다 먼저 일정금액을 지급받을 권리)을 가집니다. ※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서울시) : 1억6,500만원 이하(’23.02.21~), 1억5,000만원 이하(’21.05.11.~’23.02.21.) 최우선변제 금액(*서울시) : 5,500만원 이하 ※ 대항력 요건 : 전입신고(*신고일 다음날부터 대항력 효력)
원상복구 계약 전	입주자 퇴거 시 세대 주거전용 부분 시설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부주의로 인해 파손 또는 고장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주택을 인도받는 즉시 세대 주거전용 부분 시설 원상 사진을 꼭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입주(예정)자 임차인 입주 중 확인 필수사항

필수 확인사항	해당 법령 및 근거
임대료 증액	[관련 법령] “표준임대차계약서” 내용에 따라, 사업자(시행사,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액 5% 범위 이내로 임대료 증액이 가능합니다. 단, 임대차계약 혹은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이 불가합니다. ※ 임차인은 임대료 증액이 과도하게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라 인상을 거절할 수 있으며 , 이때 임대사업자는 임차인과 합의를 통해 적정 인상 선을 찾거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를 통해 인상 범위를 조정 받아야 함
임대보증금 반환	[관련 법령] “표준임대차계약서” 내용에 따라, 사업자(시행사,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 해야 합니다.
원상복구 계약 후	입주자 퇴거 시 세대 주거전용 부분 시설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부주의로 인해 파손 또는 고장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비용에 관해 권한 있는 제3자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유보금으로 우선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유보금 한도 기준(안) : 최대 300만원 (파손(고장) 정도에 따라 차등) ※ 우선 공제한 유보금에서 정산한 나머지 차액 반환 기준(안) : 15일 이내 반환

※ 청년안심주택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입주 전부터 입주 신청, 계약(갱신), 퇴거까지 정보 제공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 전월세지원센터 연계를 통한 법률지원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청년안심주택종합지원센터 : 02-793-0765~0768, 서울시 전월세지원센터 : 02-2133-1200

**쌍문역 청년안심주택
인이어쌍문 입주자 추가 모집공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445)

공공지원 민간임대

2025. 09. 24.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주택개요]

- 주택위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103-6 (4호선 쌍문역 3번 출구)
- 공급호수 : 총 288세대 중 금회 추가모집 공공지원민간임대 6세대(특별공급 2세대, 일반공급 4세대)
- 단 지 명 : 인히어쌍문
- 시 행 사(임대사업자) :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 시 공 사 : 반도건설 주식회사

※ 기존 계약자는 본 추가모집에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사실이 확인될 경우 탈락 처리됩니다.

※ 1인 1타입에 대해서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청약이 모두 탈락 처리됩니다.

■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공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하고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 청년안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등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5.09.24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이며, 모집공고 내 모든 일정 및 일시는 한국시간 기준입니다.

■ 당 단지는 **사용승인 및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신규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신규 가입 진행되며, 전체 보증금에 대하여 계약기간(2년) + 약한달을 보증기간으로 가입됩니다.)**

※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가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 이후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보증보험은 이행되지 않으며, 등기사항전무증명서상(등기부등본상) 잔금일 익일까지 물건지(입주단지)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근저당설정, 가압류 등 권리관계변동이 없어야 합니다. (단지(임대사업자) 문제로 인한 입주예정자 대출 불가 시 계약 파기 위약금(100만 원)은 전액 환불 조치됩니다.)

※ 청년안심주택 자체 근저당, 가압류 등에 의해 보증금 대출이 불가능 또는 일부 제한될 수 있으니, **입주예정께서는 계약전 반드시 대출 실행은행에 문의 바랍니다. (입주예정자께서는 계약 체결 전 가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방법 : 임대차계약기간 시작 직전 임대주택에 대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보증서 발급일과 임대차계약 시작일 사이 새로운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

■ 본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의 임대주택 소유자는 사업주체인 (주)케이티앤지입니다.

■ 본 주택의 계약자 관리, 임대관리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체인 지에이치파트너즈가 수행합니다.

※ 임차인은 위와 같은 임대주택의 양도 및 임대인 지위의 승계에 대해 동의하며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자 개인의 사유로 일반(개인)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계약 체결 전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유 대출 불가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는 위약금 100만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및 서울시와의 협약 내용 등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임대사업자는 이를 임대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보증수수료의 75%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임대료는 보증수수료가 미포함 된 금액이므로 입주 후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임대사업자가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유효기간 이전에 갱신 예정이며, 보증보험 미갱신시 사업주는 계약해지를 원하는 입주인에게 계약해지 후 보증금 반환 예정임

■ 본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본 추가공고와 최초공고(2022.02.16.)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 본 추가공고의 내용이 우선시 되며 본 추가공고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공고를 따릅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쌍문역 청년안심주택 인히어쌍문 입주지원센터(02-6225-8801)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공급일정 및 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	청약신청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당첨자 서류 사본 제출 (이메일)	▷	계약체결 및 원본서류 제출
25.09.24(수)		25.09.28.(일) 00:00~23:00		25.09.29(월) 17:00		25.10.02.(목)		25.10.15.(수) 10:00~17:00

■ 입주지정기간 : 2025.11.14.(금)이후 ~ 청약 세대별 상이(협의)

■ 청약 문의

- 대표번호 : 02-6225-8801, 월요일~금요일 10:00~17:00 (점심시간 : 12:00 ~ 13:00)
-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한 상담은 입주지원센터(02-6225-8801)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청약과 관련한 유선 및 온라인 상담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 <https://naver.me/5zXR6Hi>

- 당첨자의 모든 서류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에 이메일(inhere2022@naver.com)로 스캔본(PDF)을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유형별로 청약세대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 호수의 1000%(10배수)를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순번은 공정한 추첨 방식에 의해 무작위로 부여됩니다. 당첨자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실 발생 시 예비순번대로 공급하며, **예비자의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 예비자 소진 후에도 공실이 발생할 경우 탈락자를 대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해당의 경우에도 순번은 공정한 추첨 방식에 의해 무작위로 부여되며,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 본 주택에 청약 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 주택형(타입) 별로 1건만 가능하며,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는 1세대로 간주하여 부부(예비부부)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 두 명이 각각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입주자 세대 확인은 계약 체결 전 진행됩니다.

■ 유의사항 : 최초 모집공고를 따름

- 청년안심주택 공식홈페이지 참조 : <https://soco.seoul.go.kr> (모집공고에서 인히어 검색 → 모집공고문 다운로드)

[공급현황]

(단위 : 만원)

공급 유형		주거 전용 (타입)	공급 호수	보증금	임대료
청년	특별	20m ² (B1)	2	3,840	31
청년	일반	19m ² (A1)	2	4,704	37
청년	일반	17m ² (A2)	1	4,312	34
청년 또는 신혼부부	일반	39m ² (E2)	1	7,840	62

- 상기 보증금 및 임대료는 기존 호실의 금액으로 계약되며,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보증금 및 임대료는 타입별 기준 금액이며, 계약하실 호실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계약 호실별 보증금 및 임대료 금액 계약 체결 전 상세 안내 예정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5.09.24. 입니다. 이는 청약 자격의 판단 기준일이며,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 일 이후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네이버 청약 아이디 소유자와 청약 신청자는 동일해야 함
- ※ 모집공고 내 모든 일정 및 일시는 한국시간 기준입니다.
- 본 주택의 입주신청자(이하 '신청자')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은 청약자(당첨자)와 및 계약자, 입주자(전입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청약자(당첨자) 명의로 계약 체결(공동명의 계약 불가)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소유·운영이 가능합니다. (단, 세대 당 1대만 등록하여 사용 가능)
 - 자동차가액 기준 :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 준용
- 그 외 신청자격 : 최초 모집공고를 따름 (단, 소득 및 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은 최신 기준을 따름)
 - 2025년 소득기준 - 청약 시 아래의 소득 기준에 따라 정확한 순위 선택 필요
(청약 시 선택한 소득 수준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당점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25.02.27) [단위 : 원]

순 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1순위	100%	3,598,164	5,477,003	7,626,973	8,578,088	9,031,048
2순위	110%	3,957,980	6,024,703	8,389,670	9,435,897	9,934,153
3순위	120%	4,317,797	6,572,404	9,152,368	10,293,706	10,837,258

• 지역기준 - 동일 소득일 경우 지역 순위 적용

순 위	지 역	비고
1순위	서울특별시 도봉구	거주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 대 학 : 소재지 내 대학의 재적증명서 직 장 : 소재지 내 직장의 재직증명서
2순위	서울특별시	
3순위	그 외 지역	

- 2025년 자동차 가액기준 - 차량을 소유하지 않거나, 아래 가액보다 적은 가액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만 청약가능

자동차가액
3,803만원

- 2025년 자산기준

청년 30~39세 가구 기준 적용	(예비)신혼부부 소득 3분위 기준 적용	비고
254	337	단위 : 백만원

- ※ 청년안심주택 청년(본인) 자산 기준은 **30~39세 가구** 금액을 따름
- ※ 청년안심주택 (예비)신혼부부 (구성될)세대 자산 기준은 **소득 3분위** 금액을 따름

- 공급 유형별 제출서류 : 최초 모집공고 내용을 따르되, 최신(2025년) 기준에 따름
- ※ "자격 및 자산 자동차가액 판단"과 "등록(사용) 자동차가액 판단"의 차이
 - 자격 및 자산 자동차가액 판단 : 기준 가액 이하
 - 등록(사용) 자동차가액 판단 : 기준 가액 이하만 등록하여 사용 가능 (단, 등록(사용) 할 자동차가액 판단 시 지분 소유는 미인정. 등록(사용) 할 자동차 전체 자동차가액으로만 판단)

[당첨자발표]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개별 연락
 - 당첨자 : 당첨자 발표 시 공정한 추첨 방식에 의해 동호수를 무작위로 배정하여 함께 발표합니다.
 - 예비당첨자 : 당첨자 계약 이후 발생한 잔여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사업주체가 정한 방식에 의해 순차 진행되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별첨1]

■ 공급 유형별 제출서류 (최신(25년))

- 특별공급 제출서류

제출서류		발급처	유의사항		
1.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 면허증 中 택1) ※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및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2.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 ※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세대분리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3.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 등 전체 포함)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5.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청년의 경우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추가 (입주 전 혼인신고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					
6. 월평균 소득(해당 세대원(인원) 전체) 및 자산 현황 확인서					
7. 공급신청서					
8. 서약서					
9.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0.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목전체 / 과세·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 (서울시 내역 1부, 전국 내역 1부) ※ 무주택/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 및 자산 확인 - 청년 : 본인만 출력 제출 - 신혼부부 :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 ※ "과세내역 없음" 인 경우도 발급				모집공고문 [별첨2]	
11.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해당 세대원 전체)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접 방문하여 발급		
12. 월평균 소득현황 확인서(해당 세대원 전체)		모집공고문 [별첨2]	-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현행행정규칙)) 준용		
소득 자료	13. 무소득자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소득자	일반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포함)	해당 직장,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소득여부 확인 후 해당 항목 택1
		신규취업자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재직증명서 포함)	해당 직장	
		개인사업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포함)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모집공고일 이후 세대가 변동된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의 월평균 소득현황 제출
		신규사업자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포함)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법인사업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포함)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자산 자료	14.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명의(금융, 주식, 보험 등 전체) 발급 후 작성 - 주거래 은행에서 신용정보조회서 본인명의(대출 전체) 발급 후 작성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역서 첨부 - 전체 내역(각각의 상세내역 전체) ※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 전체 내역(각각의 상세내역 전체)		모집공고문 [별첨2]	부동산 및 자동차등의 자산 자료는 제출하신 지방세세목별과세 증명서로 확인	
	※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 전체 내역(각각의 상세내역 전체)		금융결제원(인터넷)		
			주거래 은행		
	15.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사본, 해당자만 제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전·월세인 경우		
	16. [자동차 소유자]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증명 자료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공공주택 입주자

	※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추가		자산기준(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현행행정규칙)) 준용
17. [입주 자격]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증명 자료 ※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추가		또는 복지포털, 정부24(인터넷)	
18. 지역 기준 순위 대학 및 직장 소재지로 할 경우 - 대학 : 재적증명서 - 직장 : 재직증명서		재적증명서 : 대학 재직증명서 : 직장	
19.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행정복지센터	
20. 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전입신고 후 등본(당 사업지로 주소이전 된) 추가 제출			★입주 당일 전입 신고를 한 후 (입주 후 7일 이내 제출)

- 일반공급 제출서류

제출서류	발급처	유의사항
1.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 면허증 中 택1) ※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및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2.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 ※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세대분리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4.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청년의 경우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추가 (입주 전 혼인신고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		
5. 공급신청서	모집공고문 [별첨2]	
6. 서약서		
7.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8.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목전체 / 과세·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 (서울시 내역 1부, 전국 내역 1부) ※ 무주택/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 확인 - 청년 : 본인만 출력 제출 - 신혼부부 :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 ※ "과세내역 없음" 인 경우도 발급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 직접 방문하여 발급 -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현행행정규칙)) 준용
9. [입주 자격]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증명 자료 ※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추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복지포털, 정부24(인터넷)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현행행정규칙)) 준용
10.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행정복지센터	
11. 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전입신고 후 등본(당 사업지로 주소이전 된) 추가 제출		★입주 당일 전입 신고를 한 후 (입주 후 7일 이내 제출)

[별첨2] 제출서류 양식

- 공급신청서
- 서약서
- 의무준수 협약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
- 월평균 소득현황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무소득 확인서

서 약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서약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서약 내용	일반공급 신청자	청년[]	1.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임. 2.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19세이상 39세 이하인 내국인임. 3.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미혼임.
		신혼부부[]	1.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임. 2.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19세이상 39세 이하인 내국인임. 3. 신혼부부는 혼인중인자,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임. 4. 신혼부부는 임차인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후 7년 이내(혼인 후 2,555일 까지)임.
	특별공급 신청자	청년[]	1.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임. 2.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19세이상 39세 이하인 내국인임. 3.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미혼임.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함. 가.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임. 나.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임.

본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 신청이 위 작성 내용과 동일함을 서약합니다. 향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자격이 다르거나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가 될 수 있으며 그러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예비)배우자 (서명 또는 인)

지에이치파트너즈(주) 귀하

유의사항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제4항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판단합니다.
2. 본인 및 본인의 세대에 속한 자 전원에 대해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에서 임차인의 자격을 별도로 정하거나 완화하는 경우에는 서약 내용을 임차인의 요건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합니다.

의무준수 확약서(임차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아래 임대차 물건지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아래의 임차인 자격을 모두 갖추었음은 물론 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향후 주택소유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 사실이 판명된 경우 즉시 임대차계약이 취소됨은 물론 본인은 임차중인 주택에서 즉시 퇴거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요구와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항 목	내 용
가. 임대차 물건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103-6, 인하여 쌍문 (호)
나. 우선모집 임차인 자격	무주택 청년(만19~39세, 신혼부부 포함), 무주택 고령자(만65세 이상) ※신혼부부·고령자일 경우,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일 것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활용(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주)케이티앤지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다음 범위에서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 보관 /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 분	항 목
정보안내	신규공급 안내, 주택구매정보, 청약가이드, 청약 안내 등
청 약	일반·특별공급 신청 접수, 당첨자 선정, 당첨자 안내 등
계 약	납부대금 안내, 계약 안내(전화, 문자, 우편 등)
통계분석	설문 조사, 인구 통계 분석 등

■ 수집·이용할 정보

- * 필수 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 주택소유정보, 건강(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청약 신청 및 공급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
- * 부가 정보
 - 정보안내, 행사, 분석목적 수집 정보 : 성별, 이메일, 희망주택형, 소유주택, 청약통장정보(종류,금액,순위)
 - 공급계약 관련정보 : 동·호수, 공급면적, 공급금액, 공급대금 입금내역(입금일, 입금액)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폐기

- 주택공급 관련 자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관기간(당첨자 5년, 낙첨자 6개월)
- 마케팅 및 이벤트 관련 자료 : 1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 통보 및 관리 등에 관련한 업무 수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 받는 자	본 주택공급사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당사자 · 시행사 / 시공사 / 책임임차인 : (주)케이티앤지 / 반도건설(주) / 지에이치파트너즈(주) · 주택공급관련 기관 : 금융결제원, 주택도시보증공사 · 임대관리프로그램 관리회사 : (주)디엔코리아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청약자격 검증, 공급계약의 체결, 계약내용의 이행, 세금납부, 프로모션 혜택 제공 대상 여부확인 등
제공할 개인(신용) 정보의 내용	개인 기초 정보 : 성명, 주민번호, 현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등 공급계약 관련 정보 : 동·호수, 공급면적, 공급금액, 공급대금 입금내역(입금일, 입금액) 등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 정보 보유/이용기간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달성시까지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일반·특별공급 신청,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 하셔야만 일반·특별공급 신청 및 (공급)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제공 동의 여부	귀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고유식별정보의 동의 여부	귀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주민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개인정보의 열람과 정정

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6조에 의거, 대표번호 02-6225-8801 으로 연락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 정정 / 삭제를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대한 위탁

개인정보보호법 제 26조에 따라 전문업체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위탁 계약시 개인정보보호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관련 지시 엄수, 개인정보에 관한 금지 및 사고시의 책임 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업체가 변경될 경우, 회사는 변경된 업체 명을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공지합니다.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나. 정기에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보유자성명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현금자산	예 <input type="checkbox"/>		원		본인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배우자	
	임차보증금 (세입자작성)	예 <input type="checkbox"/>		원	[임차인]	본인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수분양자]	배우자	
	주식/증권	예 <input type="checkbox"/>		원	[주주(보유자)]	본인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주주(보유자)]	배우자	
	출자금/ 출자지분	예 <input type="checkbox"/>		원	[출자자]	본인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출자자]	배우자	
	분양권	예 <input type="checkbox"/>		원	[수분양자]	본인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수분양자]	배우자	
	부채	현금부채	예 <input type="checkbox"/>		원		본인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배우자
임대보증금		예 <input type="checkbox"/>		원	[임대인]	본인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임대인]	배우자	

※ 기타 자산 및 부채가 없을 시에도 보유여부에 반드시 체크하여야 합니다.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비사업자 확인각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자용)

신청자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확 인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 아닌자 ※ 성년자만 기재			-	
			-	
			-	
			-	
			-	

본인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구비서류 중 “자영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향후 사업자등록상태 검색결과 사업자임이 판명될 경우(허위서류 제출) 당첨 취소 또는 임대주택 공급 계약 취소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소득 확인서 (해당자만 작성)

신청유형		일반공급 <input type="checkbox"/>		특별공급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e-mail				
소득여부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내용					

본인은 상기와 같이 소득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입주자격 조사 결과에 따른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며, 계약해지(해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